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증원〉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8.
3.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었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다시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예정임.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확정안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통합 이전의 2개 선거구 체제로 복원되고, 서초구 역시 특례로 증원되었던 의원정수가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종전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다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통합돼 4명을 선출하던

구조에서 시범실시 지역 종료에 따라 소선거구제로 복원되지 않고 의원정수만 1명 감원된 3명 선거구로 획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선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또한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여 헌법상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라 선거구와 송파구 아 선거구의 경우 인구 규모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현행 의원정수로는 유권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3 및 부칙 제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별표3]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424명에서 427명으로 3명 증원하여 전체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 역시 2,978명에서 2,981명으로 3명 증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78명) <table> <tr> <th>시 도</th><th>총 정 수</th></tr> <tr> <td>서울특별시</td><td>424</td></tr> <tr> <td>부산광역시</td><td>182</td></tr> <tr> <td>대구광역시</td><td>120</td></tr> <tr> <td>인천광역시</td><td>122</td></tr> <tr> <td>광주광역시</td><td>68</td></tr> <tr> <td>대전광역시</td><td>63</td></tr> <tr> <td>울산광역시</td><td>50</td></tr> <tr> <td>경기도</td><td>460</td></tr> <tr> <td>강원도</td><td>174</td></tr> <tr> <td>충청북도</td><td>136</td></tr> <tr> <td>충청남도</td><td>176</td></tr> <tr> <td>전북특별자치도</td><td>198</td></tr> <tr> <td>전라남도</td><td>247</td></tr> <tr> <td>경상북도</td><td>288</td></tr> <tr> <td>경상남도</td><td>270</td></tr> </table>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81명) <table> <tr> <th>시 도</th><th>총 정 수</th></tr> <tr> <td>서울특별시</td><td>427</td></tr> <tr> <td>부산광역시</td><td>182</td></tr> <tr> <td>대구광역시</td><td>120</td></tr> <tr> <td>인천광역시</td><td>122</td></tr> <tr> <td>광주광역시</td><td>68</td></tr> <tr> <td>대전광역시</td><td>63</td></tr> <tr> <td>울산광역시</td><td>50</td></tr> <tr> <td>경기도</td><td>460</td></tr> <tr> <td>강원도</td><td>174</td></tr> <tr> <td>충청북도</td><td>136</td></tr> <tr> <td>충청남도</td><td>176</td></tr> <tr> <td>전북특별자치도</td><td>198</td></tr> <tr> <td>전라남도</td><td>247</td></tr> <tr> <td>경상북도</td><td>288</td></tr> <tr> <td>경상남도</td><td>270</td></tr> </table>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7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7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신설>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u> <u>제3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종료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이하 “선거구”라 한다)를 확충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한다.</u>
--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시범실시가 도입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등에서 선거구 구획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종전과 달리 확대 운영된 바 있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 총정수는 424명(지역구의원 370명, 비례대표의원 54명)이었지만

시범실시 지역으로 인해 3명이 증원되어, 결과적으로 총 427명(지역구 의원 373명, 비례대표의원 54명)이 선출되었음.

다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종료에 따라 선거구 체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 및 의원정수로의 환원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증원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확대된 의원정수를 유지함으로써,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국회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는 [별표 3]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도별 인구 변동 및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향후 [별표 3]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2
